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: C-퇴직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1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1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2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0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밸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: C-퇴직e 클래스 추가, 환매수수료 삭제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6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6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제41조(환매수수료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	제41조(환매수수료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

	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2. C-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	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08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ⅰ)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2017년 08월 1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: 해당사항 없음 2. C-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: C-퇴직e 클래스 추가, 환매수수료 삭제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7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7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6.83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2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
	제41조(환매수수료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30일 이상~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제41조(환매수수료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08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

		ⅰ)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ⅱ) 30일 이상~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 나. 2017년 08월 1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: 해당사항 없음
	2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R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2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R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08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ⅰ)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2017년 08월 1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: 해당사항 없음
	3. C-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	3. C-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단기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: C-퇴직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3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3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8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6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액티브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: C-퇴직e 클래스 추가, 정기갱신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1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

		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1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4.6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)	

- KB 재팬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: C-퇴직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2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2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미국 S&P500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: C-퇴직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12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12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퇴직연금 배당30 K-1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: 종류형 변경, C-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2조(용어의 정의) 9. "종류형"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2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3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5.3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2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3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-	<부 칙>

	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(종류형으로 변경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) **제2조(기존가입자 처리) 기존가입자는 신탁계약의 변경 효력발생일부터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 변경된다.**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퇴직연금 이머징 국공채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: 종류형 변경, C-E 클래스 추가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2조(용어의 정의) 9. "종류형"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2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5.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2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-	<부 칙>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(종류형으로 변경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) **제2조(기존가입자 처리) 기존가입자는 신탁계약의 변경 효력발생일부터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 변경된다.**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퇴직연금 가치&중소형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: C-E 클래스 추가, 정기갱신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3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 ③3.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1,000분의 2.67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)	

2. 변경(예정)일 : 2017년 08월 11일